

2027학년도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공고[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학년도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구매예정수량	총구매예정수량: 165벌(2027학년도 예상인원) 2027학년도 165벌(남·여학생 체육복 동복 165벌 / 남·여학생 체육복 하복 165벌)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사양서 참조
기초금액	금143,500원[동복(80,000원), 하복(63,500원)] ※ 부속품(교표 등), 부가비용(가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09.01.(화) 10:00 ~ 2026.09.15.(화) 12: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 평택화양중학교 교육행정실 (본관1층)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제출, FAX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09.01.(화) 10:00 ~ 2026.09.15.(화) 12: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체육복별 상한가를 초과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2026.09.18.(금) 15:30 평택화양중학교 창의융합실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제안서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별도의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으며, 블라인드 심사로만 진행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28.(월) 11:00 이후 평택화양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2027학년도 동복 2027.02.19.(금) / 하복 2027.05.07.(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	평택화양중학교 지정장소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불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의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원”단위 금액 절사 산출)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기간 : 2028년 2월 말까지]

-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나라장터, 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운동복, 세부품명번호 5310290201, 5310290101) 이어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사양서[붙임 1] 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붙임 2] 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사.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 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9.01.(화) 10:00 ~ 2026.09.15.(화) 12:00 (기한엄수)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평택화양중학교 교육행정실 (본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 13]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서류 등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체육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리고 제출)

- 1)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 2) [붙임 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 3) [붙임 6] 업체서약서 1부.
- 4) [붙임 7] 체육복 납품제안서 11부

※ 제안서 접수 시, 계약서류 첨부용 제안서 1부는 업체 날인하고, 위원 평가용 제안서 10부는 업체명 및 날인을 제외하여 업체를 알 수 없게 작성 제출

- 5) [붙임 8]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1부
- 6) [붙임 9] 체육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1부
- 7) [붙임 10]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1부
- 8) [붙임 11] 체육복 A/S계획서 1부(A/S지정업체가 별도있을 경우 체육복 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 9) [붙임 12]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 10) 본교가 제시하는 체육복 규격과 동일한 체육복 견본 각1벌(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 체육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린 후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태이핑 처리 등)
 -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 제출된 체육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체육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 11) 체육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 12)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 13)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 13-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14) 공정거래위원회 범위반사실확인서

-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17)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18) 직접생산확인서 1부.
- 19)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20)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 21) [붙임 13]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서류와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당 시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9.01.(화) 10:00 ~ 2026.09.15.(화) 12:00 (기한엄수)**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 **2026.09.18.(금) 15:30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나. 장소 : **평택화양중학교 창의융합실**

다. 제안서 평가방법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체육복 견본 품질 및 제안 내용에 대하여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3]“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 1) 제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체육복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제거된 체육복 견본만 가지고 품질심사를 실시합니다.
- 2)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의 효력

-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체육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2026.09.28.(월) 11:00 이후** 평택화양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 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pm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체육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붙임16]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가. 본교 체육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 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낙찰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합니다.
- 바. 본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차. 기타 체육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031-681-8471)
체육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학생안전부(☎ 031-681-8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27학년도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사양서) 1부【붙임 1】
2. 2027학년도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붙임 2】
3.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붙임 3】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붙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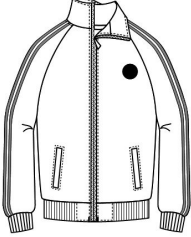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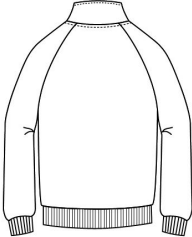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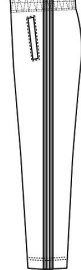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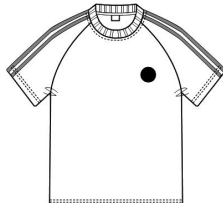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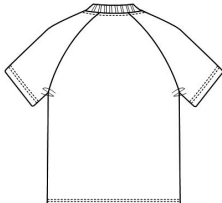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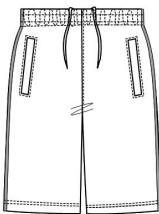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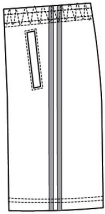
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 5】
6. 업체서약서 1부【붙임 6】
7. 체육복 납품 제안서 1부【붙임 7】
8.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붙임 8】
9. 체육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1부【붙임 9】
10.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붙임 10】
11. 체육복 AS계획서 1부【붙임 11】
12.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붙임 12】
13. 위임장 1부【붙임 13】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붙임 14】

2026. 09. 01.

평택화양중학교장

【붙임 1】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사양서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사양서

동복 상의	 	- 기본 완지퍼 디자인 - 몸판 검은색 , 흰색 2선 배색 - 나그랑 스타일 - 왼쪽 가슴 학교 와펜 - 앞지퍼 외입술 주머니 - 양쪽 지퍼 주머니 적용 - 원단 혼용률 : 면 51% 폴리에스터49%
동복 하의	  	- 몸판 검은색 , 옆선 흰색 2선 배색 - 밑단 일자형 긴바지 - 원단 혼용률 : 면 51% 폴리에스터49%
하복 상의	 	- 몸판 검은색 흰색 2줄 배색 - 나그랑 스타일 - 왼쪽 가슴 학교 와펜 - 원단 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
하복 하의	  	- 몸판 검은색, 옆선 흰색 2줄 배색 - 일반 일자형 반바지 - 원단 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
와펜		- 동하복 체육복 상의 왼쪽 가슴 적용 - 크기 : 5cm * 5cm

2027학년도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평택화양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 상대방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 ① 체육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낙찰단가 × 구매 예정 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해 예정 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체육복 치수 측정)

- ① “공급자”는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 ③ “학교”는 “공급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 ④ 치수 측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체육복의 상태)

-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땀의 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굵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 땀으로 박아야 한다.
-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

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에 되어 있어야 한다.

- ③ “공급자”는 체육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체육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체육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체육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 ① 납품된 체육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 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 ②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자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동복과 하복의 납품시점이 상이할 시 최종 납품시점 기준)에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 보증기간 : 1년, 구매 확정 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 ② “공급자”의 체육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 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평택화양중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7년 월 일

평택화양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객관적 평가 (30점)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체육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20
		체육복 일부품목(일부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10
		미인증	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원단 원산지증빙서 제출	체육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10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5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0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20
		우수	15
		보통	10
		미흡	9
		매우 미흡	5
	● 제품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매우 우수	20
		우수	15
		보통	10
		미흡	5
		매우 미흡	2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 참고 - 무상 A/S 의무기간 - A/S내용(수선,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 제출한 A/S 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10
		우수	7
		보통	5
		미흡	3
		매우 미흡	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	10
		보통	7
		미흡	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상표 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 (관련 사진 보관)	우수	10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3
		허위서류, 서류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시	부적격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가점/감점	● 제품 만족도 조사 점수가 낮은 업체(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1년간)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5
	●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	-1
		3건 ~ 4건	-3
		5건 이상	-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	-10
	● 규격미달 건본 - 견본품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또는 부적격	혼용률 차이 ±10이상	-5
		혼용률 차이 ±15이상	부적격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 업체지정서 또는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공인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0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또는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공인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10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10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5점
-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옷감의 재질(2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제품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제품의 완성도(2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등 세부적 사항), 유상 A/S내용
- 업체와 A/S 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제품 만족도 조사 점수가 낮은 자(감점)

- 최근 3년 이내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제품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
-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추가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 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 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 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교복업체(감점)

-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견본품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또는 부적격

【붙임 4】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호 (지명)번호	평택화양중학교2026-34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7학년도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입찰보증금	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평택화양중학교의 2단계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평택화양중학교장 귀하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_____

사업자 번호 : _____

사업자 대표 : _____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체육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실시에 따라, 평택화양중학교(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현화1로 70)가 시행하는 체육복‘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09.01.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평택화양중학교장 귀하

【붙임 6】 업체 서약서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평택화양중학교에서 실시한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체육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는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본사는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동·하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4. 체육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 등
 -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품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5.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체육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한다.
6.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7.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8. 체육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평택화양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9.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평택화양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6년 양 일

작성자: (인)

평택화양중학교장 귀하

체육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체육복 납품 실적(참고용)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체육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기재하는 경우 실적증명서 첨부)

3.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

4. 체육복(동·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할 것]

6. 체육복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7.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평택화양중학교장 귀하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구 분		품 명	섬유혼용률(%)	원산지	기 타
동복	상의				
	하의				
하복	상의				
	하의				

2026. . .

제안자 : (인)

평택화양중학교장 귀하

체육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단위(대)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 시설물		
(1) 체육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2) 체육복 판매시설의 보유 여부 : 있다 () / 없다 () (3) 체육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학교주관구매 납품 실적 :()건 (5) 체육복 판매장에서 A/S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 (인)

평택화양중학교장 귀하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명 : 2027학년도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학교로고 등),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구분 품명		수량	단가비율(%)	비고
동복	상의	1	%	
	하의	1	%	
동복 소계			100 %	
하복	상의	1	%	
	하의	1	%	
하복 소계			100 %	
체육복 합계				

2026년 월 일

입찰자 :

(인감날인)

평택화양중학교장 귀하

체육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 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00 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 지정업체 (A/S 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체육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계획서 제출 시 A/S 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 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해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평택화양중학교장 귀하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사업자 상호 : _____

사업자 번호 : _____

사업자 대표 : _____

당사는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 ③ 재고 확보 방안
-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 방안
-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 ⑦ 기타

2026년 월 일

제출자 : (인)

평택화양중학교장 귀하

【붙임 13】 위임장

위임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붙임 1.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 대리인 입찰참가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1절(발채)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위임자 : (인)

평택화양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택화양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택화양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택화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화양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화양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화양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평택화양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평택화양중학교장 귀하

- (※ 최종 낙찰자만 제출) -

확 인 서

_____ 업체에서는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 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동복, 하복)이 귀교가 제시하고 있는 체육복 사양과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귀교에서 즉시 구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반납 및 환불 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부적합한 체육복의 제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본 계약 업체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 사양서를 준수하여 제작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 소 :

평택화양중학교장 귀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평택화양중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 대표 ○○○(이하“계약 상대자”이라 한다)은 “계약자”의 2027학년도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동·하복] 구매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수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학년도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동·하복\]구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학생 반 번호, 성명, 신체 측정치수 등 체육복 제작·납품관련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계약체결일로부터 ~ 공급완료 기간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²⁾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평택화양중학교장 (인)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현화1로 70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회사명 〇〇〇 대표자 〇〇〇 (인)

주 소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 보안각서

본인은 평택화양중학교장의「2027학년도 평택화양중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평택화양중학교장 귀하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당사는 체육복 사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체육복 지원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2(법정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평택화양중학교장 귀하

체육복 동복 최종 납품 확인서

※ 학적의 학생명단과 대조할 것, 수령확인은 학생 or 학부모 서명

연번	학생명	성별	수령일자	연락처	동복 수령 확인	비고
예시) 1	홍길동	남	2025.11.28.	010-1234-5678	서명	

위와 같이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 (서명)

학교 확인자 : (서명)

평택화양중학교장 귀하

체육복 하복 최종 납품 확인서

※ 학적의 학생명단과 대조할 것, 수령확인은 학생 or 학부모 서명

연번	학생명	성별	수령일자	연락처	하복 수령 확인	비고
예시) 1	홍길동	남	2025.12.19.	010-1234-5678	서명	

위와 같이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 (서명)
학교 확인자 : (서명)

평택화양중학교장 귀하